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건설업 정책적 지원 방안

2018. 09.10.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 I. 근로시간 변화 과정
- II.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III. 현장 데이터 분석
- IV. 설문 조사 결과
- V. 일본 사례
- VI. 정책적 지원 방안
- VII. 결론



Contents

I. 근로시간 변화 과정

II.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III. 현장 데이터 분석

IV. 설문 조사 결과

V. 일본 사례

VI. 정책적 지원 방안

V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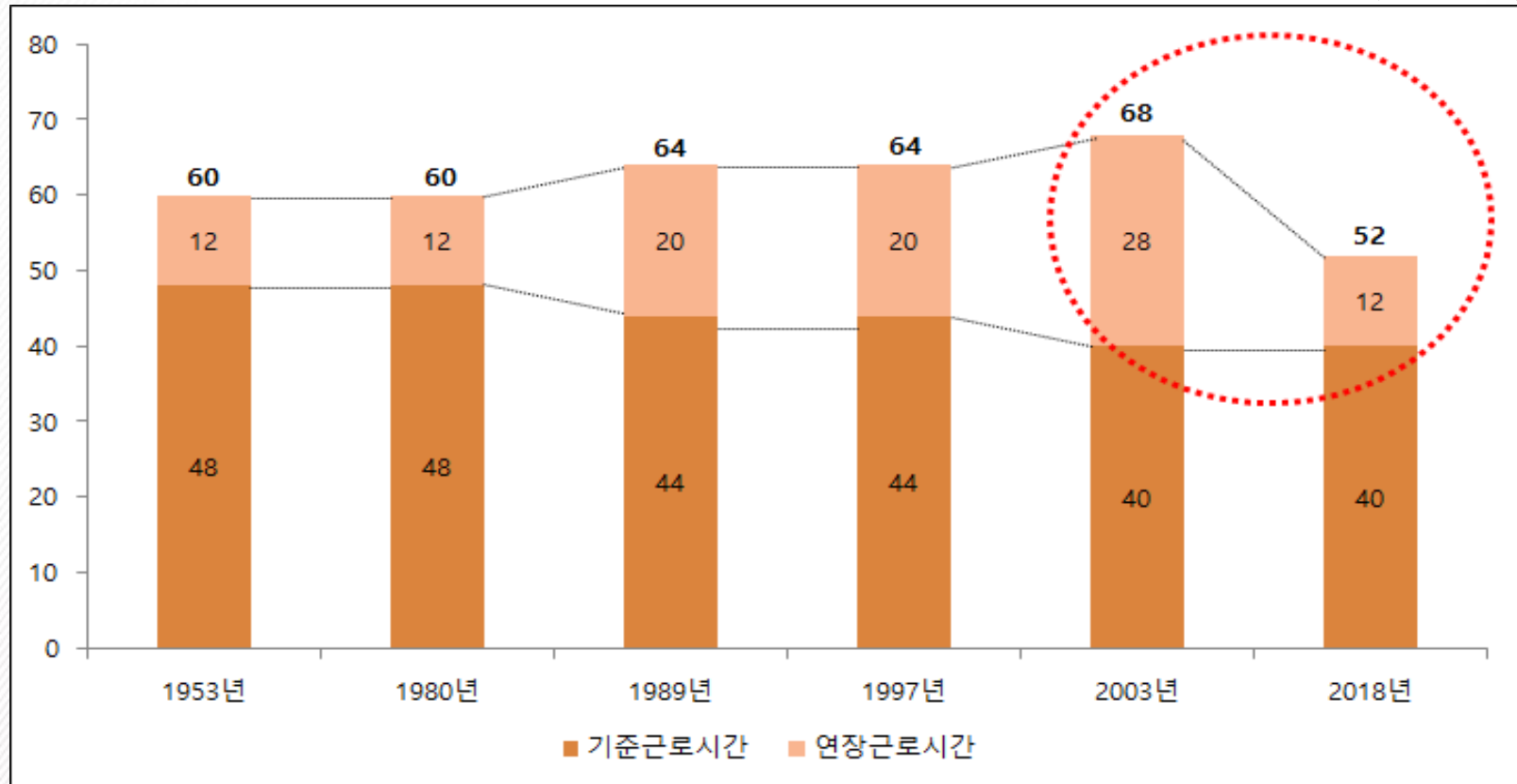


I. 근로시간 변화 과정

- 법정근로시간은 지난 65년 동안 60시간에서 68시간으로 증가해 오다가 최근 52시간으로 12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 변화 추이

(단위 : 시간)



I. 근로시간 변화 과정

- 2018년 현재 개정되는 법정근로시간은 지금까지와 비교해 볼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음

주요 시기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주당 기준 근로 시간	44시간	40시간	40시간
연장 및 휴일 근로 시간	최대 2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8시간)	최대 28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최대 12시간
법정근로 시간	64시간	68시간	52시간
추가근로 시 수당 지급 기준	통상임금의 150%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휴일근무: 통상임금의 200%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2주 단위(주당 최대 48시간), 1개월 단위 (주당 최대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	2주 단위(주당 최대 48시간), 3개월 단위 (주당 최대 52시간, 1일 12시간 한도)	논의 중
정착 시까지 걸린 기간	300인 이상 기업 및 금융보험업 : 1989.3.29.부터 44시간 적용 300인 미만 기업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 1989.3.29.~1991.9.30. 46시간 적용 - 그 외 업종 : 1989.3.29.~1990.9.30. 46시간 적용 - 모든 기업 44시간 적용 : 1991.10.1.~	- 금융·보험, 공공 부문 및 1000인 이상 기업 : 2004.7.1.~ 300인 이상 기업 : 2005.7.1.~ 100인 이상 기업 : 2006.7.1.~ 50인 이상 기업 : 2007.7.1.~ 20인 이상 기업 : 2008.7.1.~ 20인 미만 기업 : 2011.~	3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8.7.1.~ 50~300인 미만 기업 : 2020.1.1.~ 5~50인 미만 기업 : 2021.7.1.~

Contents

I. 근로시간 변화 과정

II.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III. 현장 데이터 분석

IV. 설문 조사 결과

V. 일본 사례

VI. 정책적 지원 방안

VII. 결론



II.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건설업은 특례 업종에서 제외, 7월 1일 부터 적용 받는 300인 이상 종합건설업체는 109개

상시 근로자수 별 종합건설업체 적용 현황

구 분	300인 이상	50인 ~ 299인	50인 미만	합 계
종합건설업체	109개사	387개사	9,421개사	9,917개사
시행시기	'18.7월	'20.1월	'21.7월	

자료 : 대한건설협회

- ✓ 상당수 건설현장은 적정공사비·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 37개 현장 조사 결과, 관리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9.8시간, 기능인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6.8시간

관리직 및 기능인력의 주당 실제 근로시간

구분	전체 공사	발주자별		공종별		사업규모별	
		공공공사	민간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관리직		59.8시간	60.6시간	56.6시간	62.1시간	59.3시간	59.9시간
	원도급	58.3시간	58.9시간	56.4시간	64.3시간	57.2시간	59.4시간
	하도급	61.2시간	62.4시간	56.9시간	59.8시간	61.5시간	60.4시간
기능인력		56.8시간	57.2시간	55.4시간	53.0시간	57.5시간	56.8시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II.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01

노동집약적 Project 단위의 산업

- 모든 사업이 각각 Unique한 특성으로 반복 작업이 적어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타 산업에 비해 힘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

02

선 판매 후 생산 구조

- 선 생산 후 판매 구조를 가진 타 제조업은 생산비 상승을 판매가에 반영할 수 있지만 건설산업은 선 판매 후 생산 구조로 불가항력적인 변화에 큰 피해(공기 및 사업비 증가)

03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 옥외 사업

- 건설사업은 옥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변화가 매우 큼(혹한, 혹서, 장마, 미세먼지 등)

04

한 사업장에 다수의 기업 존재

- 건설업은 한 사업장에 많게는 수십 개의 기업(원하도급, 감리 등)이 공존. 이는 현 개정안의 단계별 적용과정에서 혼란 야기

05

인력수급의 어려움

-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화는 매우 심하며, 현재에도 인력 수급이 힘들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음.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산업임.

06

해외 건설공사 수주 경쟁력 약화

- 현지국의 근로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고, 현지 인력 선호로 인해 고용창출에도 악영향
- 해외건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경우 기후 여건상 단축된 근로시간 준수 어려움
- 해외현장 파견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낮아져 건설인력의 해외근무 기피로 인력수급 차질 초래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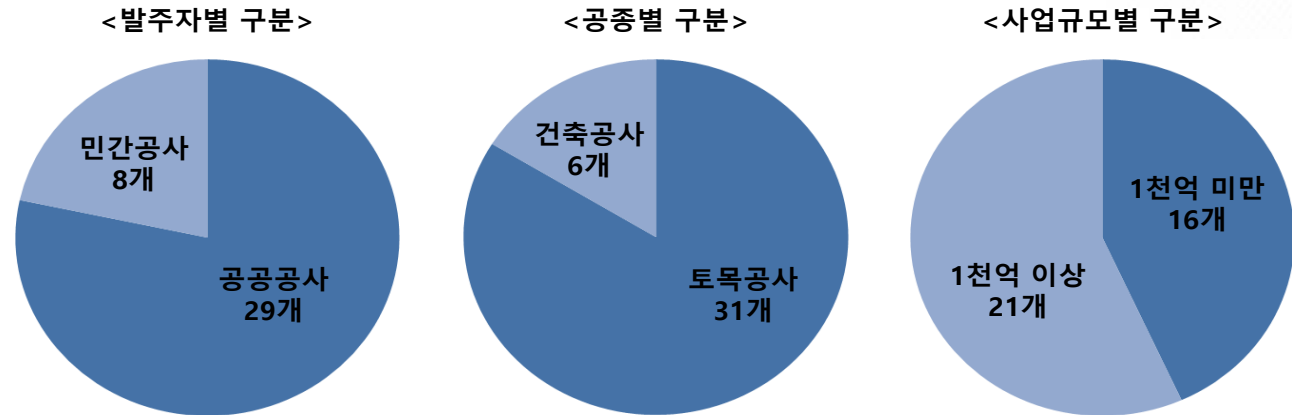
- I. 근로시간 변화 과정
- II.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III. 현장 데이터 분석**
- IV. 설문 조사 결과
- V. 일본 사례
- VI. 정책적 지원 방안
- VII. 결론



III. 현장 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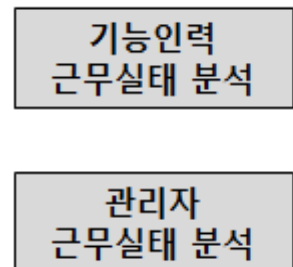
- 총 37개 공사 현장(공공공사 29개, 민간공사 8개)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

실태조사 대상 공사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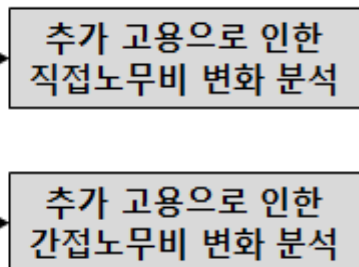


분석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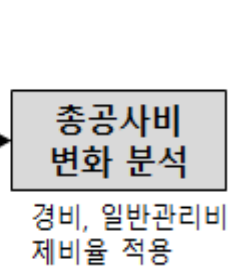
STEP 1



STEP 2



STEP 3



III. 현장 데이터 분석

-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관리직은 평균 13%, 기능인력은 8.8%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관리직 및 기능인력의 주당 근로시간 감소 비율

구분	전체 공사	발주자별		공종별		사업규모별	
		공공공사	민간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관리직	-13.0%	-14.2%	-8.2%	-16.2%	-12.3%	-13.2%	-12.9%
원도급	-10.8%	-11.7%	-7.8%	-19.2%	-9.0%	-12.5%	-9.6%
하도급	-15.1%	-16.7%	-8.6%	-13.1%	-15.4%	-13.9%	-15.9%
기능인력	-8.4%	-9.0%	-6.1%	-1.9%	-9.6%	-8.4%	-8.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1인당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

구분	전체 공사	발주자별		공종별		사업규모별	
		공공공사	민간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관리직	-13.0%	-14.5%	-7.4%	-16.2%	-12.3%	-13.0%	-12.9%
원도급	-10.3%	-11.1%	-7.6%	-19.1%	-8.6%	-12.0%	-9.1%
하도급	-15.4%	-17.5%	-7.8%	-13.0%	-15.9%	-14.4%	-16.1%
기능인력	-8.8%	-9.8%	-5.2%	-3.2%	-9.9%	-8.0%	-9.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III. 현장 데이터 분석

- 근로시간 단축으로 총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할 가능성 있어
- 직접 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간접 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근로시간 단축은 간접 노무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임금 유지 시 분석 결과 종합

항목	구분	전체 공사	발주자별		공종별		사업규모별	
			공공공사	민간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직접 노무비	최대값	25.7%	25.7%	13.3%	13.3%	25.7%	21.8%	25.7%
	최소값	0.0%	0.0%	0.0%	0.0%	0.0%	0.0%	0.0%
	평균값	8.9%	9.7%	6.1%	4.1%	9.8%	8.3%	9.3%
간접 노무비	최대값	35.0%	35.0%	13.3%	35.0%	25.7%	35.0%	25.7%
	최소값	0.0%	0.0%	4.6%	0.0%	0.0%	0.0%	0.0%
	평균값	12.3%	13.5%	8.0%	14.8%	11.9%	12.4%	12.3%
전체 노무비	최대값	20.5%	20.5%	11.8%	11.0%	20.5%	17.5%	20.5%
	최소값	0.9%	0.9%	0.9%	0.9%	0.9%	0.9%	1.1%
	평균값	8.0%	8.7%	5.7%	4.5%	8.7%	7.6%	8.4%
총 공사비	최대값	14.5%	14.5%	3.7%	6.4%	14.5%	13.6%	14.5%
	최소값	0.3%	0.3%	0.4%	0.3%	0.4%	0.3%	0.5%
	평균값	4.3%	5.0%	1.8%	2.3%	4.7%	4.4%	4.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tents

- I. 근로시간 변화 과정
- II.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III. 현장 데이터 분석
- IV. 설문 조사 결과**
- V. 일본 사례
- VI. 정책적 지원 방안
- VII. 결론



IV. 설문 조사 결과

-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 그 결과, 100개 건설업체에서 총 161부가 회수
 - 업종별로는 토건 업체가 전체의 66.7%(104부), 시공능력 순위별로는 1-50위의 대형건설업체가 전체의 72.1%(62개사)를 차지

조사 대상 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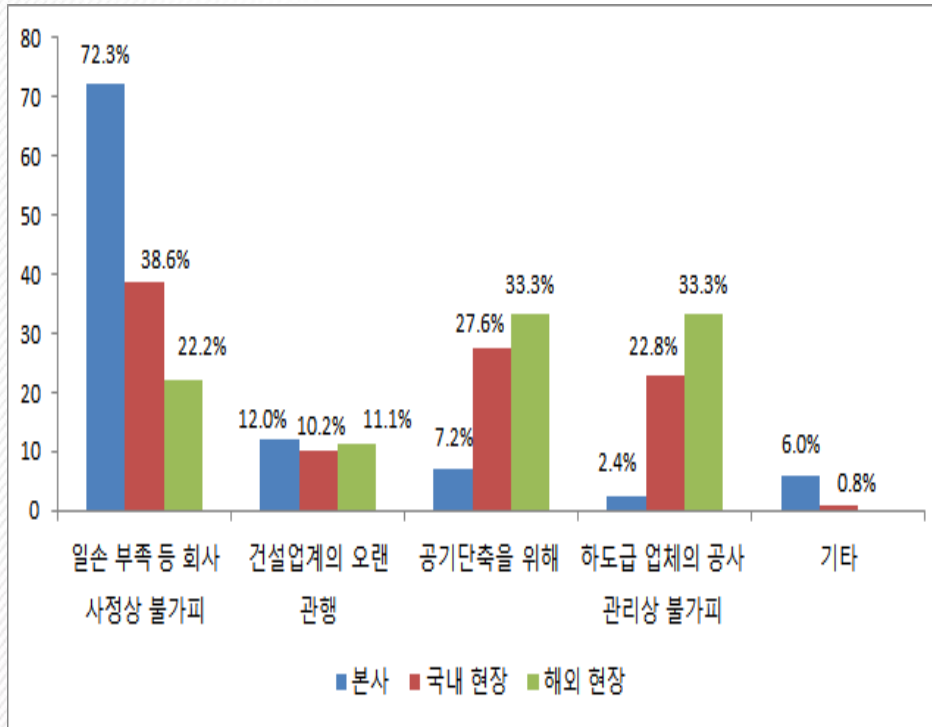
주 업종	빈도	비중	시공능력	빈도	비중
토건	104	66.7	1-50위	62	72.1
건축	19	12.2	50위-200위	6	7.0
토목	28	17.9			
산업설비	2	1.3	200위 이하	18	20.9
조경	3	1.9	합계	86	100.0
합계	156	10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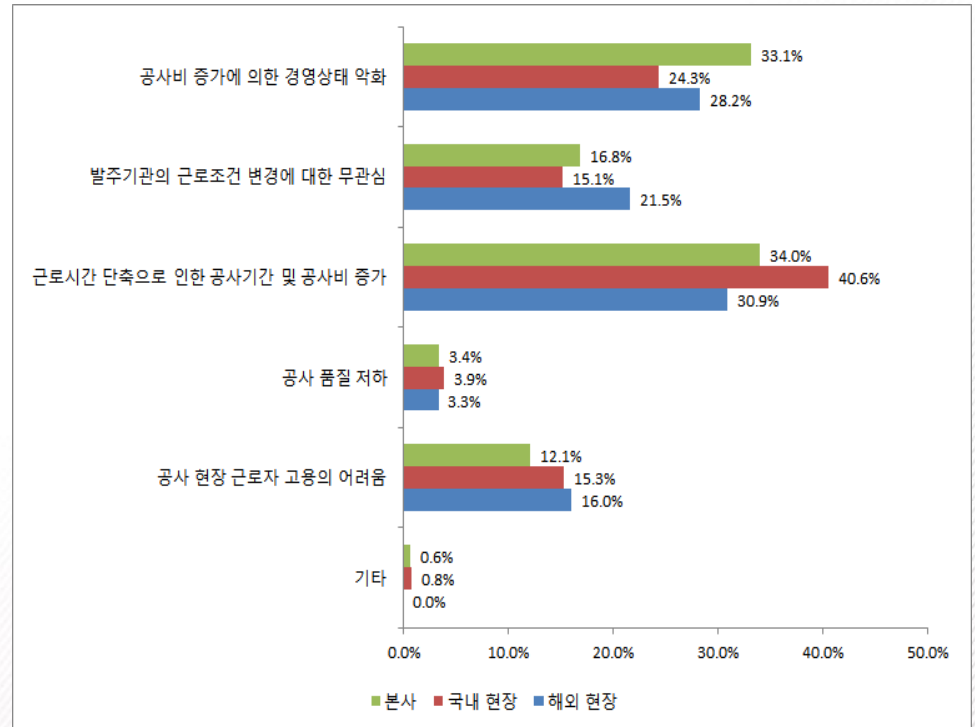
IV. 설문 조사 결과

- 초과 근무 발생 원인 : 본사 및 현장 ‘회사 사정 상 불가피하기 때문’이 1순위로 꼽혀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 : 본사 및 국·내외 현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가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2순위로 꼽혀

초과 근무 발생 원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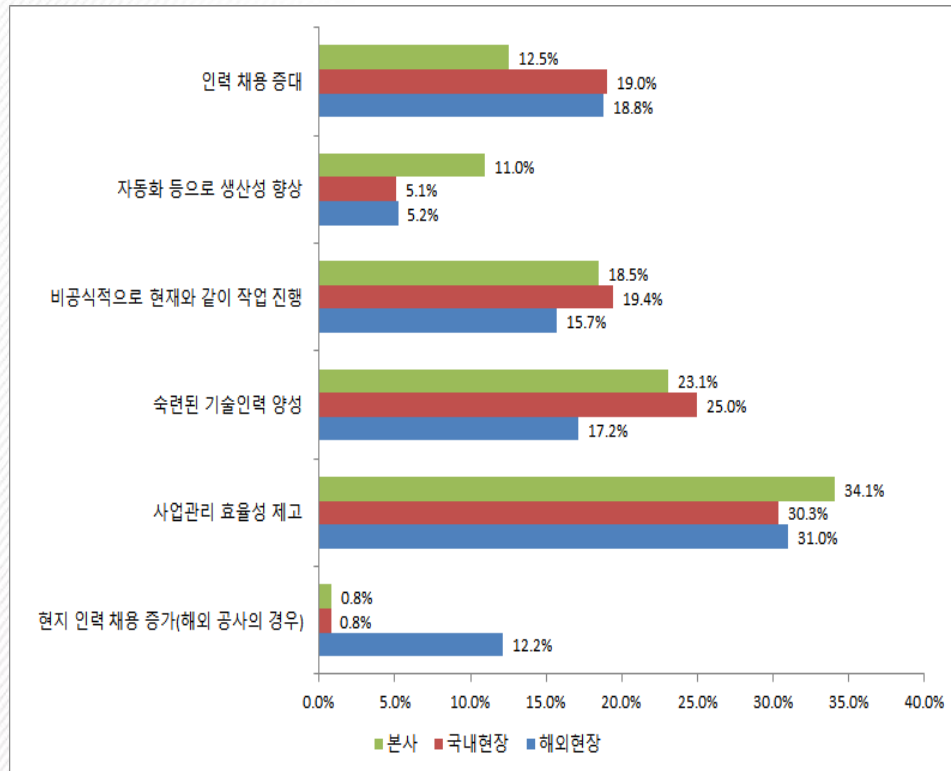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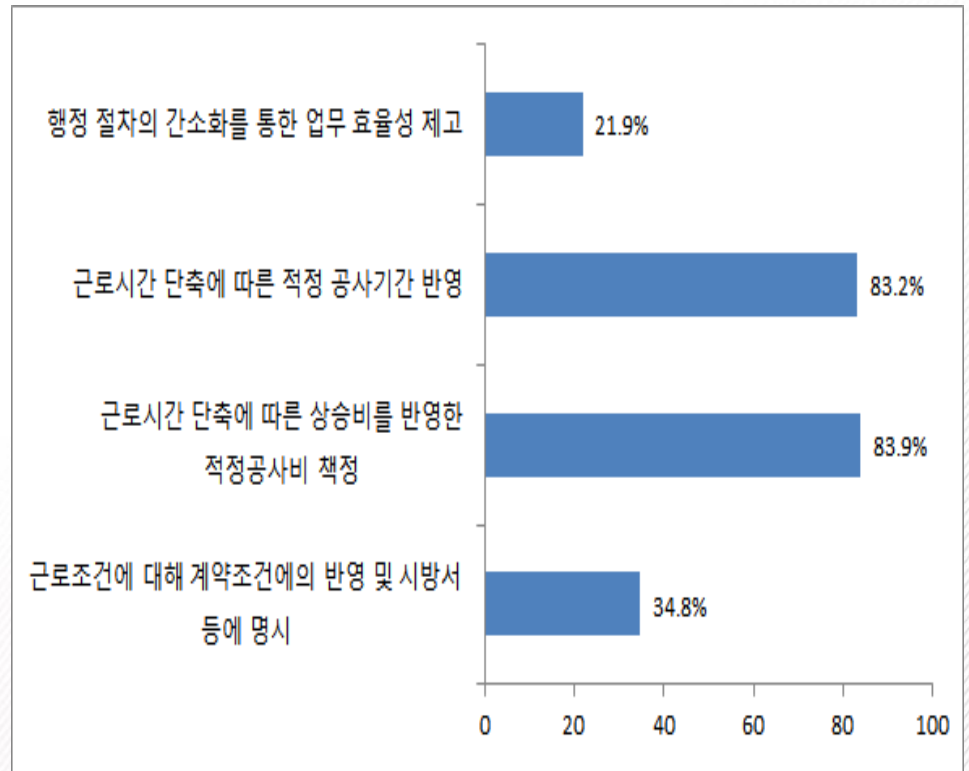
IV. 설문 조사 결과

-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체의 대응 방안: 본사 및 현장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1순위로
-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상승비를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반영’이 최우선으로 꼽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응 계획



근로시간 단축 관련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중복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IV. 설문 조사 결과

- 12개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나타난 애로 사항

정부의 세부 지침 부재

- 근로시간단축관련법규의세부 지침이명확하지않아서공사에서제반여건을감안/검토하여발주기관에보고가어려움.
- 따라서내용의상세보강필요및공공기관발주처의 의지도중요
- 민간공사현장의경우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계약변경에어려움이더크게존재

품질 저하 및 안전관리 공백 우려

- 관리자부재시간증가,숙련공확보어려움및잡은인원교대에따른 품질및 안전문제발생우려
- 근로시간단축에따른인건비상승반영불가시추가원가발생억제를 위해 인건비가낮은외국인근로자및 현장미경험자등 현장투입우려
- 폭우, 폭설, 폭염, 미세먼지등기후환경적요인에따른공기부족고려필요⇒ 근로자의안전과 품질에도영향

근로자 관리의 문제 발생

- 인력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상승불가피
- 작업일수증가에따른 고가장비임대료상승
- 업체간근로시간상이에따른혼란
- 근로시간단축에따라실제기능인력의임금감소⇒ 근로시간단축적용을받지않는 현장으로이직률증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의 부족

- 현재2주단위, 3개월단위로탄력적근로시간제운용
- 건설업의특수성을감안하여단위기간의확대 필요

해외 공사 진행의 어려움

- 해외 JV사와의근무시간격차발생
- 추가인력투입및공기연장유발
- 해외현장파견기피
- 근로시간이제한적인국내기업의경쟁력저하
- 해외건설특성상예상치못한돌발상황발생으로초과근무방생시근로기준법위반을할수있는상황발생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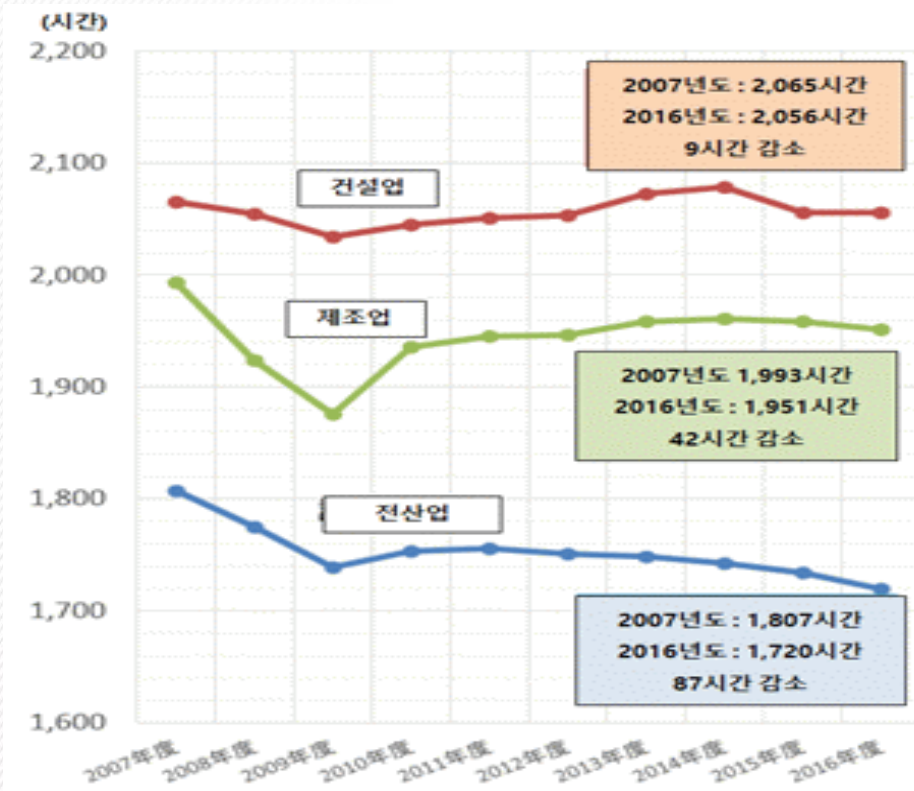
- I. 근로시간 변화 과정
- II.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III. 현장 데이터 분석
- IV. 설문 조사 결과
- V. 일본 사례**
- VI. 정책적 지원 방안
- V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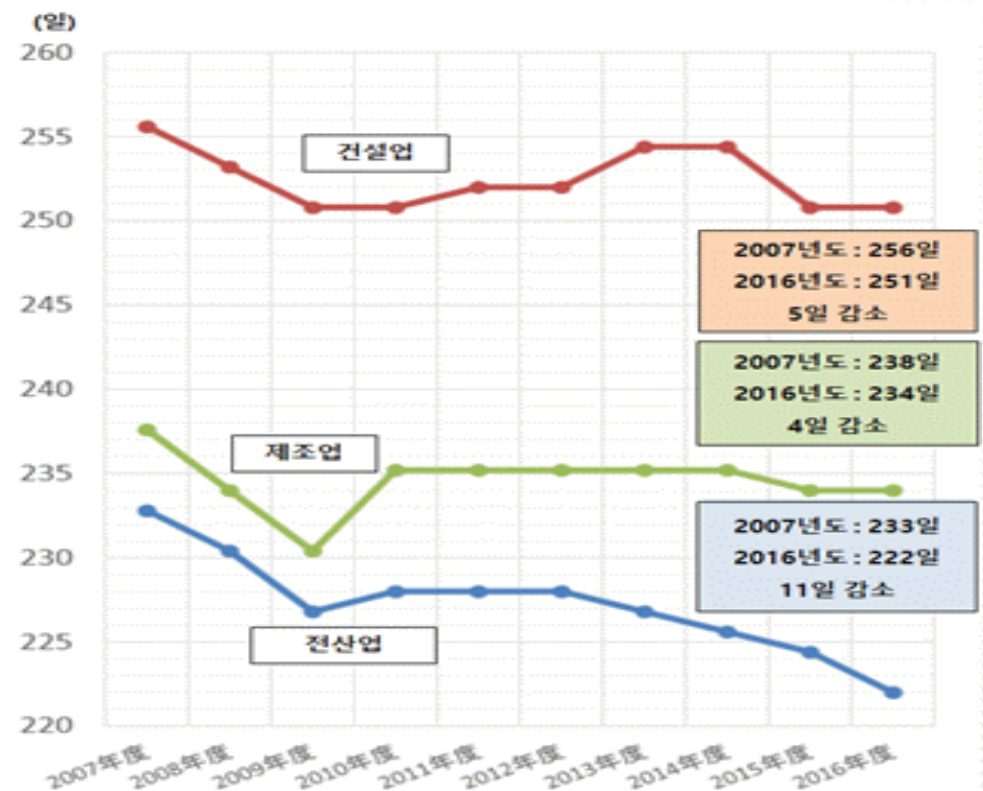
V. 일본 사례

- 2016년 기준, 일본 건설업 종사자의 실 근로시간 2,065시간, 연 출근 일수 251일

연간 실 근로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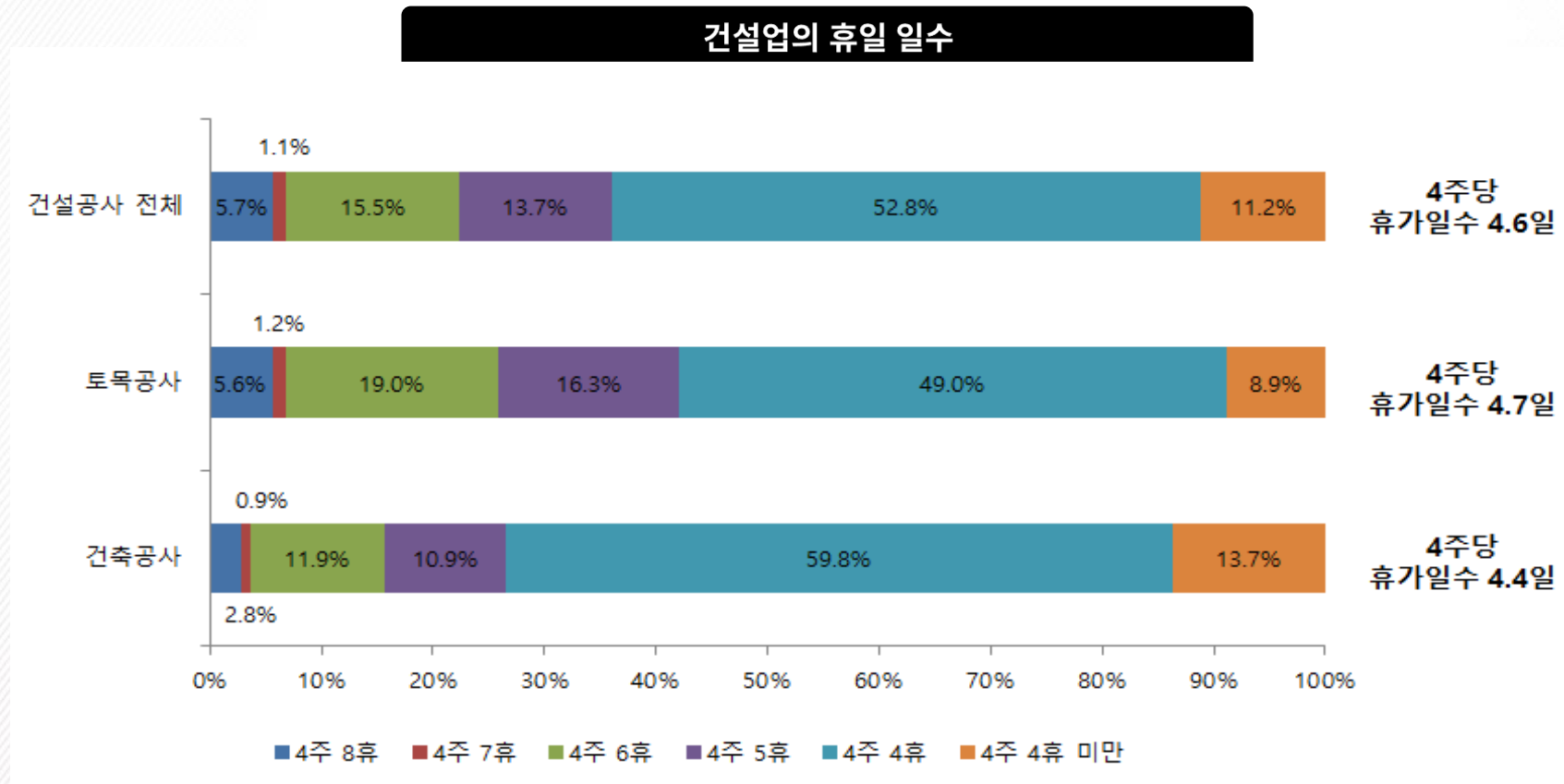
연간 출근 일수의 추이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V. 일본 사례

- 일본 건설업 종사자의 약 64%는 4주 4휴 이하 근무



자료 : 일건협, 2015년 노동시간 단축 설문

V. 일본 사례

- 일본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 줘 적응시간 마련

일본의 건설업 시간 외 노동 규제의 재검토

	현행제도	일하는 방법 개혁 실행 계획(2017년 3월 28일 결정)
원칙	<근로기준법> (1)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2) 36협정을 맺을 경우, 협정에서 정한 시간까지 시간 외 노동 가능 (3) 재해 복구 및 폭설 시 제설 등 피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임시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연장 가능(노동법 33조)	좌동
36협정 한도	<후생 노동 장관 고시 : 강제력 없음> (1) 원칙 : 월 45시간, 연 360시간 · 단, 임시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에 상한없음.(년 6개월까지)(특별 조항) (2) 건설업은 (1)의 적용을 제외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내용> (1) 원칙 : 월 45시간, 연 360시간 · 연간 근로시간 설정 ① 연 720시간(월 평균 60시간) ② 연 720시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사무량 증가 시 상한선 설정 a. 2-6달 평균에서 80시간 이내 b. 월 100시간 미만 c. 월 45시간을 넘는 달은 년 6회로 한정 (2) 건설업의 적용 · 5년간은 현행 제도 적용 · 5년 이후 개정된 법칙을 적용. 이때, 재해로 인한 복구 등의 업무가 발생 시 위의 (1) ②의 a.b.는 적용되지 않음(노동 기준 법 33조에 의거).

V. 일본 사례

- 그러나 건설업에 주어진 5년의 유예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 해소, 주휴 2일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정부가 활발히 모색 중에 있어

주휴 2일 공사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 공공공사의 주휴 2일 공사 실시 확대를 위해 노무비 보조, 공통 가설비, 현장관리비의 보정률 재검토
- 민간공사도 주휴 2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보조
- 주휴 2일 근무를 실행하고 있는 현장을 시각화해 홍보
- 2017년 8월 '적정한 공기 설정 등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개정해 적정 공사 기간 설정 지원

주휴 2일 대상 공사의 실시 건수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고건수 (대응 건수)	824 (165)	2,546 (746)	적용 확대

주 : 재해 복구 공사, 제약이 있는 공사 등은 제외한 후 주휴 2일 대상 공사의 적용 확대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보도자료(180320)

보정 계수(토목 공사의 경우)

	2017년	2018년
노무비	-	최대 1.05
기계경비(임대료)	-	최대 1.04
가설비	1.02	최대 1.04
현장 관리비	1.04	최대 1.05

새로 설정

재검토

주 : 4주 6휴일 이상 현장의 상황에 맞게 보정

주 : 주휴 2일을 시행하는 모든 기업에서 적정 가격으로의 하도급 계약,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자와 건설업 관련 정부 부처가 협력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보도자료(180320)

Contents

- I . 근로시간 변화 과정
- II .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III. 현장 데이터 분석
- IV. 설문 조사 결과
- V . 일본 사례
- VI. 정책적 지원 방안**
- VII. 결론



(1)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약업무 처리 지침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

기획재정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 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계약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조치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7호”,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제4호”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함
 - ✓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 비용 산정 기준 부재**
 - ✓ 대하여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 ✓ **발주 예정 공사에 대한 명확한 처리 지침 부재**
 -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 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계약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이며,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에 이행될 부분임.
 -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 ✓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계약상대방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준공일(납품일 등) 변경 불가 등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계약기간 연장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휴일 또는 야간작업 지시 여부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휴일 또는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23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7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2018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계약
 - ✓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대상으로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함.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필요
- ✓ 신규 발주 공사: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및 적정 공사비 산출 필요

VI. 정책적 지원 방안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 초과 근무 시간의 상한을 ‘주’의 개념이 아닌 ‘월’의 개념으로 바꿀 필요 있어
 - 실제 인터뷰 결과에서도 ‘주’ 당으로 초과 근무시간의 상한선을 설정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한국 vs 주요국 근로시간 규제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주 35시간
초과근무상한	주12시간	- 월45시간, 연360시간(주당 환산 시 약 11.3시간) - 노사 합의 시 연360시간 추가 근로 허용(단, 1개월에 100시간 이내)	연장 근로 제한은 없으나 일부 주는 일 10시간 또는 12시간을 상한으로 규정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	1개월, 1년(노사합의)	6개월 또는 1년(노사합의)	6개월 또는 24주 이내 (근로자 합의), 1년(단체 협약)
초과 근무 규제 예외	보건업, 운수업 (노선 버스업 제외)	신기술, 신제품 등 연구/개발직	-	-
초과 근무 규제 적용 유예	X	건설, 자동차 운전, 의사, 사탕 제조에 대해 5년 유예	-	-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를 현행 2주 → 4주, 3개월 → 1년 단위로 확대 필요

✓ 건설업은 옥외 사업으로 날씨 · 계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임. 환경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가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는 2주(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동의 시)에서 최대 3개월(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시)로 제한되어 있으나, 환경적 요인 및 작업의 공정률에 따라 업무량이 다른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부칙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준비 기간이 길어 탄력근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탄력근로제 운용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찬성, 그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단위에서 4주 단위(단, 해외공사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8주 단위)로,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도 현행 3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3)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 현장 별 적용

-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단계적 유예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건설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필요

-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위한 별도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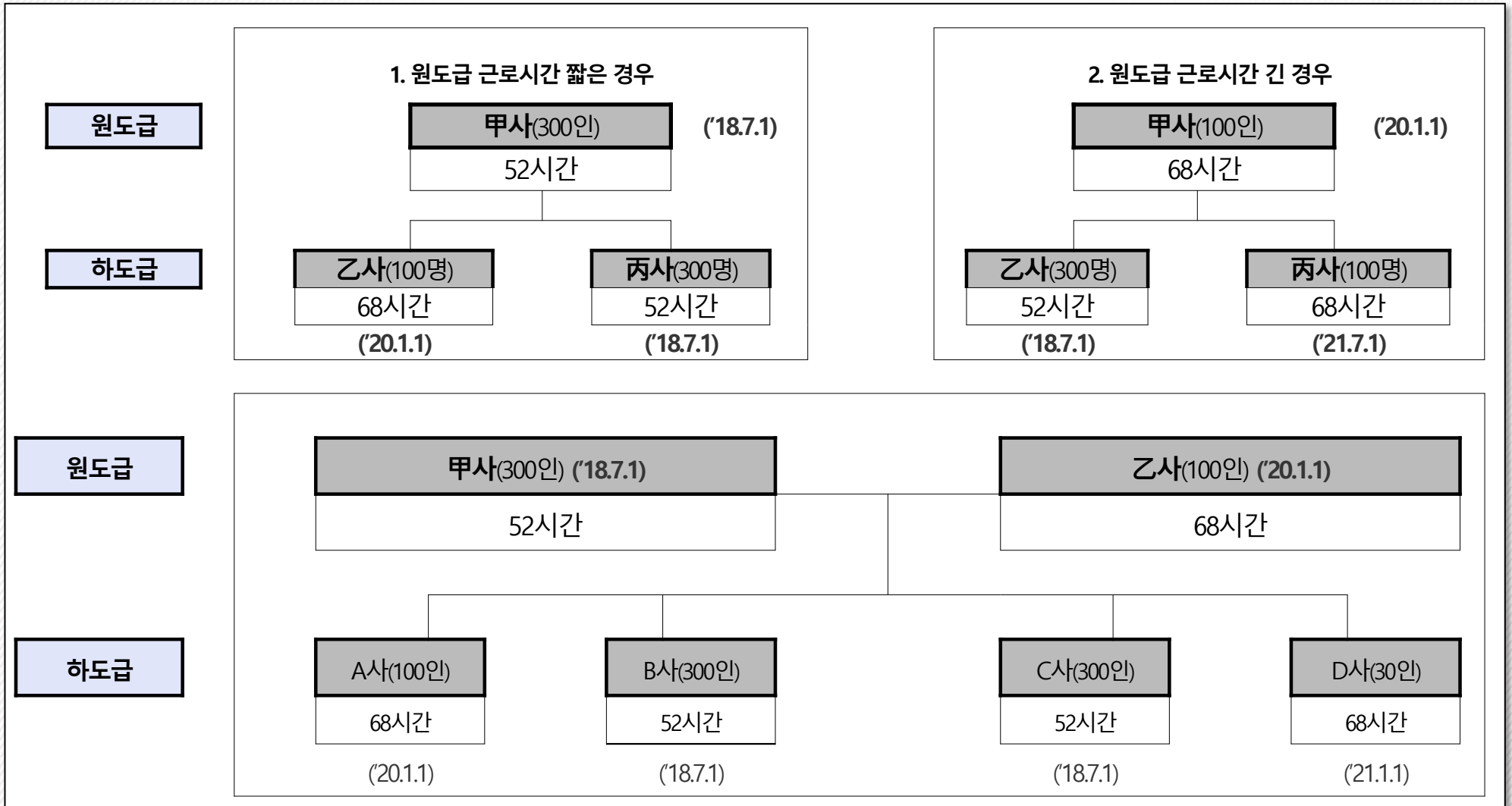
공사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시 근로자 수 도출 공식

$$\text{상시 근로자 수} = \frac{\text{총 공사계약금액} \times \text{해당연도 노무비율}}{\text{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text{조업월수}}$$

- ✓ 한 사업장에 다수의 크고 작은 기업이 공존하는 건설 현장의 특성상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일관된 단계별 적용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도 영향

VI. 정책적 지원 방안

(3)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 현장 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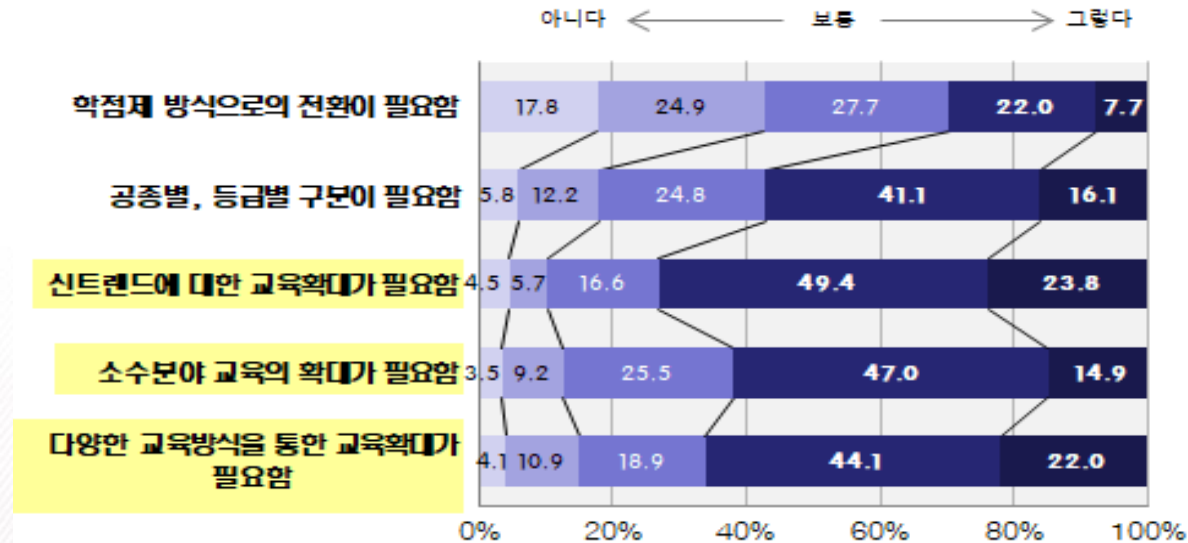
VI. 정책적 지원 방안

(4) 건설업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관 협력 필요

✓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숙련된 기술자와 기능인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

- 현재 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 설문 조사 결과(국토교통부, 2017)에서도 현재 법정직무교육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트렌드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 및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한 교육확대 필요’, ‘소수분야 교육의 확대 필요’라는 응답이 높게 나옴.
- 기능인력의 경우 일용직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현재 정부에서는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기능인등급제 추진 중

법정
직무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식의
개선 사항



자료 : 국토교통부(2017),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Contents

- I . 근로시간 변화 과정
- II .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III. 현장 데이터 분석
- IV. 설문 조사 결과
- V . 일본 사례
- VI. 정책적 지원 방안
- VII. 결론**



-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산업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

근로시간 단축의 개선 방향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 필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자재비, 노무비 등의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해외와 비교해 보아도 상대적으로 빠른 적용 속도

국가별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까지 걸린 기간

국가	단축 전 근로시간	단축된 근로시간
일본(8년간 4시간 단축)	44시간*1991년 기준	40시간*1999년 기준
프랑스(16년간 4시간 단축)	39시간*1982년 기준	35시간*1998년 기준
독일(29년간 5시간 단축)	40시간*1966년 기준	35시간*1995년 기준
한국(4년간 16시간 단축)	68시간*2017년 기준	52시간*2021년 기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

감 사 합 니 다